

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견

의안 번호	62
----------	----

제출년월일 : '98. 12. 1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필요경비율이 종전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98.7.23)으로 농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결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골자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

가. 우리구 농지세 과세대상작물 : 배추,대파,시금치,당근,무우,상추,깻잎,

나. 작물별 평균필요경비율 .

작 물 별	배 추	대 파	시금치	당 근	무 우	상 추	깻 잎
평균필요 경비율(%)	85	81	72	81	68	80	85

3. 관계법령

가. 지방세법 제208조 및 제197조내지제222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및 제147조내지제171조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8조 및 제83조내지제95조

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견

1. 배 경

농지세부과를 위한 평균필요경비율이 종전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98. 7.23)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함.

2. 농지세 개요

가. 납세의무자 : 농지소득이 있는 자

나. 과세대상 : 벼와 특수작물(과수, 인삼, 연초, 소채, 묘목등)

다. 부과징수

- 1년간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 : 다음연도 1.31까지 (납세자)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 다음연도 2월말까지(구청장)

- 확정결정 부과 : 다음연도 3.16 ~ 3.31납기

라. 과세표준

농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초공제(년 560만원)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평균필요경비율(%)

마. 평균필요경비율 개요

-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기타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의 금액을 농지소득금액으로 함.

-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물별 평균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

바. 세 율 : 3% ~ 50%(5단계 초과누진세율)

3. 우리구의 농지세 부과현황

농지소득금액 년560만원 미만으로 인한 과표 미달로 과세한적 없음

4. 농지세 작물별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안

가. 작물별 월평균 거래가격, 작물별 필요경비등 시장 조사

나. 농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쳤음.

다. 작물별(년도별) 평균 필요경비율

- '93~'97년은 시승인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

- '98년은 우리구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 승인안

(단위:%)

연도 작물	'93	'94	'95	'96	'97	'98
배 추	66	72	72	76	86	85
대 파	-	-	69	67	72	81
시금치	65	67	69	67	72	72
당 근	70	68	71	76	79	81
무 우	71	73	72	68	59	68
상 추	79	-	72	84	80	80
깻 잎	72	85	82	84	83	85

5. 참고자료 (붙임참조)

가. 농지세 필요경비조사서

나. 농지세 필요경비산출내역

다. '98년도 작물별 시장조사표

라. 작물별 수확량 참고자료

마. 필요경비조사항목 시장조사 현황